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정봉
전화 062-231-4332 / 팩스 0502-193-7661

보도자료

2022. 6. 9.(목)

제 목

**단순 교통사고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
보완수사로 거액의 대출·보험사기 전모를 규명**
- 3명 구속 기소, 5명 불구속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(제11조 제2항 제3호)
- ※ 2022. 6. 8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(부장검사 이태일)는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피고인 일당의 조직적인 대출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, 주범 3명을 구속 기소,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피고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, ‘햇살론’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 및 대출심사 절차가 간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,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, 허위사업체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계 12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한편,
 - 그 수익으로 구입한 외제차를 이용하여 4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계 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함

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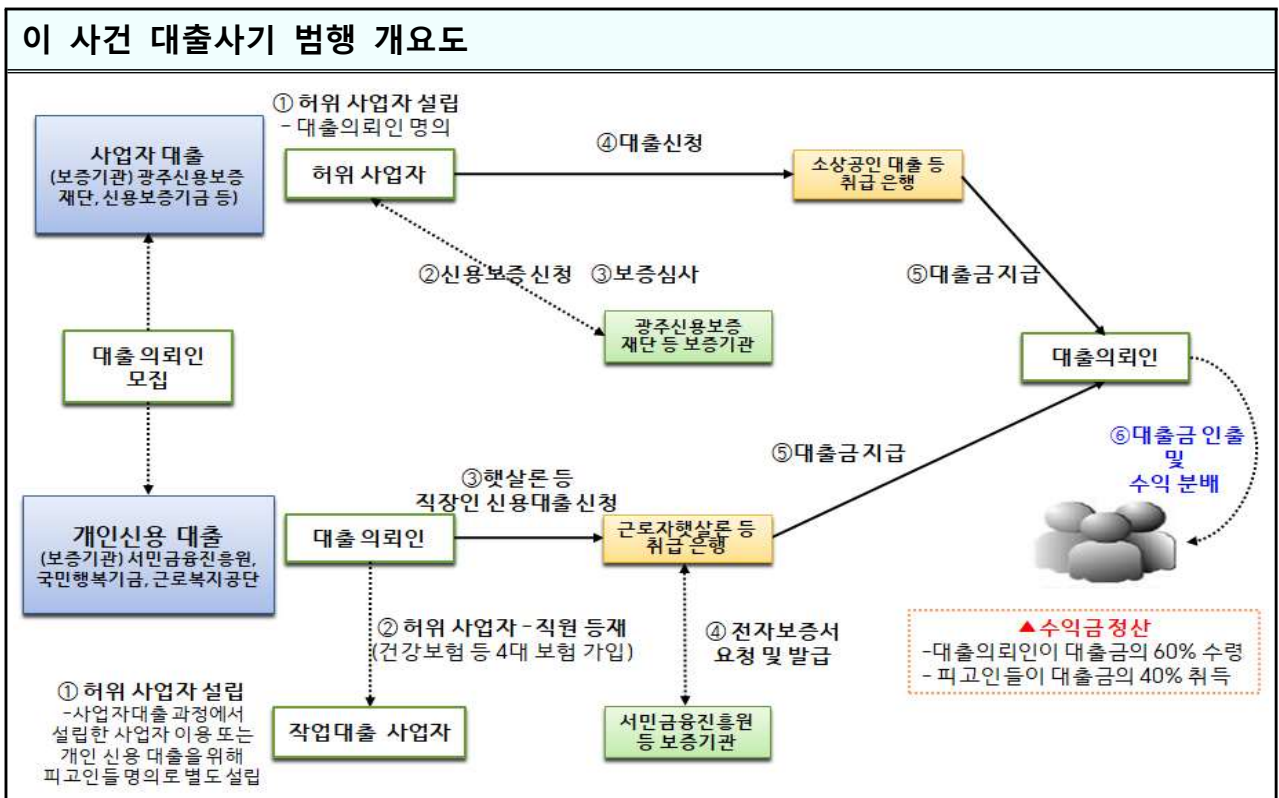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(※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별첨)

- A○○(前 조직폭력배, 작업대출 사기단 총책), C○○(A○○ 운영의 작업대출 사무소 대출의뢰인 모집책), 작업대출 사무소 직원 D○○ 등 5명
- B○○(A○○의 친형, 보험사기 주범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(A○○ 등 7명은 공모하여), 소상공인 정책자금, '햇살론' 등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심사절차가 간이한 점을 이용하여, '17. 10. ~ '22. 3. 대출의뢰인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20회에 걸쳐 3억 8천만 원 상당의 사업자 대출금을 편취하고, 대출의뢰인이 허위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속여 82회에 걸쳐 8억 2천만 원 상당의 개인 신용 대출금을 편취 [대출사기]
- (A○○ 등 6명은 공모하여), '18. 12. ~ '21. 9. 대출사기 수입금으로 매입가는 낮지만 수리비가 고액인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고,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6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[보험사기]



II 주요 수사 경과

- '21. 9. 경찰, B○○ 등을 피해자로 하는 교통사고 사건 송치
- '21. 10. 검찰은 B○○ 등의 보험사기 의심 정황 있음을 이유로 경찰에 보험사기 부분 보완수사요구

- ▶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B○○가 동일 장소에서 교통사고 당한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고, 금융감독원에 B○○의 보험금 수령내역 조회한 결과 B○○ 등이 약 2년간 60회 이상 보험금 수령한 사실 확인
- ▶ 현행 대통령령(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)에 따르면, **송치사건과 관련성 있는 범죄 단서를 확인**하더라도 '1인의 동종 수죄' 등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한 **검사의 수사개시 불가**한바, B○○ 등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함

○ '21. 10.~12. **송치경찰서(교통범죄과)의 수사 여건 등으로 보완수사가 실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검사는 경찰에 보험금 수령 자료 등 최소한의 서류만 첨부하고 입건 후 송치하여 줄 것을 요청**

○ '21. 12. 27. **경찰, 교통사고 사건 재송치 및 보험사기 사건 송치**

※ 경찰은 피의자 등 조사 없이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자료만 받아 보험사기로 입건 후 송치

- ▶ 현행 법령 및 실무상 **보완수사요구는 송치경찰관서에 하여야** 하나, 교통사고 사건의 **송치경찰관서**는 일선 서 교통범죄과로 주 업무가 교통사고 출장 조사 등이어서 다수가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 등 **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**이었음
- ▶ 또한 현행 법령상 **검사는** 경찰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**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음**
 - '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'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(형사소송법 §197의2③)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고, 이 사건의 경우 **정당한 이유가 없는 요구 불이행**이라 보기도 어려움
- ▶ 이에 **부득이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검·경 협의를 통해 우회적 조치를 취한 결과,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를 근거로 비로소 수사 진행할 수 있었음**

○ '22. 1.~3. **인권보호부와 수사과는 계좌추적, 통화내역·자동차 등록원부 분석 등을 거쳐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규명하고, 대출사기 범행 병행한 사실도 확인**

○ '22. 3. 25. **A○○, B○○ 구속 기소**

○ '22. 4.~5. 수사과는 신용보증재단, 서민금융진흥원등 압수수색, 휴대전화 포렌직 등 추가 수사를 거쳐 **피고인들이 본래 작업대출 사기단인 사실 규명**

○ '22. 6. 8. **C○○ 구속 기소, A○○의 대출사기 범행 여죄 및 D○○ 등 불구속 기소**

Ⅲ

수사 결과 및 의의

- 속칭 '작업대출' 사무실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또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을 편취하고, 보험사기 범행까지 병행한 조직적 사기단 엄단
 -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사기 정황을 확인 하였으나, 보험사기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하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에서, 경찰 송치관서의 여건 등 보완수사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건을 재송치받아 적극 수사한 결과, 대출사기 및 보험사기 전모를 규명
 - 특히, 피고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, '햇살론' 등 저소득·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·대출 심사가 사업장 외관 확인,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점을 악용하여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간판 설치, 4대 보험료 납입 등을 통해 손쉽게 대출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였는바, 향후 관련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

※ 향후 이 사건 수사결과 등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예정

□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의 전모를 규명

-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제3조에 따르면 송치사건 관련인지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가능하나, 이 사건과 같이 '교통사고 송치사건 피해자들의 보험사기 혐의'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함
- 이에, 검사가 경찰에 보험사기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나, 경찰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피의자로 입건·재송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건을 재송치받고, 직접 보완수사한 끝에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
- 이 같은 금번 수사를 통해, 송치사건의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하여도 검사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☑

(별첨)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순번	성명	나이, 역할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〇〇	37세 작업대출 총책	▶ 96회, 대출금 약 11.3억 원 편취 ▶ 27회, 보험금 약 4.7억 원 편취	3. 25. 구속 기소 6. 8. 추가 기소
2	B〇〇	39세(A〇〇의 친형) 보험사기 주범	▶ 34회, 보험금 약 4억 원 편취	3. 25. 구속 기소
3	C〇〇	24세 대출의뢰인 모집책	▶ 74회, 대출금 약 8억 원 편취 ▶ 3회, 보험금 약 1억 원 편취	6. 8. 구속 기소
4	D〇〇	39세(B〇〇의 동창) 대출의뢰인	▶ 1회, 대출금 2천만 원 편취 ▶ 15회, 보험금 약 2억 원 편취	6. 8. 불구속 기소
5	E〇〇	28세 대출사무소 직원	▶ 62회, 대출금 약 7.2억 원 편취 ▶ 10회, 보험금 약 2.3억 원 편취	6. 8. 불구속 기소
6	F〇〇	21세 대출사무소 직원	▶ 34회, 대출금 약 3.5억 원 편취 ▶ 6회, 보험금 약 1.2억 원 편취	6. 8. 불구속 기소
7	G〇〇	22세 대출사무소 직원	▶ 35회, 대출금 약 4억 원 편취	6. 8. 불구속 기소
8	H〇〇	22세 대출사무소 직원	▶ 14회, 대출금 약 1.5억 원 편취	6. 8. 불구속 기소